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태 감사 주요 지적사례

▮시례 1▮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관리·감독 소홀

- ■「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」제4조 제4항은 '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은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16조의 3 제2항을 따른다'라 하고 있으며,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16조의 3 제2항제2호는 '안전화, 안전조끼,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'이라규정되어 있음.
-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고용노동부령)」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 제1항 제1호는 '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'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또한, 2020년 및 2021년 대행계약서 제21조(준수사항) 제1호는 '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·보건·처리의 기준 및 방법을 이행하여야 한다'고 규정하고, 제2호는 '계약의 일반조건과 제반법령 및 이에 의거한 계약자의 행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할 것'을 명시하고 있다.

♥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관리·감독 소홀 : ○○○○과

☞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적발 후 이행에 대한 사후점검을 미실시하여 2021.5.6.(목) 현장점검시에도 2개 대행업체 근로자 모두 안전모 미착용 사례 다수 적발

▮ ^i례 2 ▮ 복리후생비 낙찰율 이상 집행 미실시

- 계약상대자(대행업체)는 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(직접노무비,간접노무비), 인보험료, 복리후생비에 대해 사후정산을 실시한다.
-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원가계산 용역상 각 비목 총액에 낙찰율 (계약율)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.

□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서 제9조(대행수수료 정산 및 환수) 및 제20조(근로자 보호)

♥ 복리후생비 계약서에 규정된 기준금액보다 과소 집행 : ○○○○과((주)△△△△△)

② 2020년 대행계약서에 규정된 복리후생비의 집행기준액은 101,355,580원이었으나, 2020년도 최종 집행액은 101.355.433원에 그쳐 147원을 과소 집행함.